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소송과 망중립성 원칙

박경신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론은 무엇인가? 보통은 press, media에 대응되는 개념인데 타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을 전문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1995년 이후 언론의 위상에 심대한 변화가 생기는데 바로 인터넷이다. 전통적 언론은 불특정다수에게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신문배포망 또는 지상파 전송시설(또는 우편을 이용한다면 엄청난 우표값)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상당한 자본이 필요했지만 인터넷은 그런 비용을 제로(0)로 만들어버렸다. 당장 개인이 유튜브에 수익 명이 볼 수 있게 텍스트도 아니고 1시간짜리 동영상을 올리더라도 비용은 제로이다. 결국 엄청난 숫자의 1인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언론의 범주는 견잡을 수 없게 늘어났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규모있는 전통적 의미의 언론은 투자자의 감시 속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조정, 중재 등의 덜 소모적인 대안적 분쟁조정절차에 더욱 수월하게 응하리라 하는 기대에 터잡아 만들어진 기관이다. 이렇게 언론의 범주가 확대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존재의의 또는 활동범위에 대한 새로운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되어 최근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사이의 소송¹⁾은 인터넷이 언론의 범주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한 원리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소송이었다.

인터넷은 TCP/IP라는 규칙을 통해 작동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단말이 다른 단말들이 발신하고자 하는(또는 수신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대신 전달해준다는 원리를 따른다. 도착지까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 이웃단말까지만 전달하면 그 이웃단말은 다시 그 옆의 이웃단말에게 전달한다. 이렇게 되면 모든 단말들이 서로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전세계 단말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엄밀히 말하면, 이들 단말들은 '라우터(router)'라고 불리는 특수한 컴퓨터들이고 이용자들은 라우터에 연결된 일반컴퓨터들을 이용함으로써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각 단말은 수많은 단말들의 메시지를 다루게 되고 하나의 메시지는 수많은 단말들을 거쳐가게 되는데, 각 단말이 이웃단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돈을 받기 시작하면 그 돈을 상호 청구하고 수령하기 위한 거래비용은 원리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커진다. 이에 따라 모든 단말들이 '한 칸씩 옆으로 전달'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돈을 서로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모두가 무료통신의 세상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또 메시지가 거쳐가는 단말들이 각자 전달조건을 부과하기 시작하면 단말들은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메시지만 보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말들은 별도의 전달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모든 메시지들을 동등하게 다루기로 했다. 결국 모든 단말들이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도록 하기 위해 각자가 금전적·비금전적 조건없이 각 이웃단말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인터넷의 기본구동원리가 확립되었다.²⁾

하지만 이렇게 자유롭고 무료인 통신의 세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말들이 최소한 이웃단말들과는 서로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 물리적 연결의 유지에는 비용이 든다. 양쪽 단말들이 똑같이 연결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비용없이 연결을 하겠지만(settlement free peering) 한쪽이 다른쪽보다 더 강하게 연결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6.25. 선고 2020가합533643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2) Barbara van Schewick (2010, 2012). Internet Architecture and Innovation, MIT Press (paper back).



원한다면 한쪽이 다른쪽에 연결비용을 지불할 것이다(paid peering). 또 상대방 단말의 메시지를 전세계 다른 단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제3의 단말들에게까지 전달해주는 단말이 있다면 그 단말과의 연결(transit)은 역시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인터넷에 새롭게 접속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이미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단말과 연결을 할 때는 그 단말을 통제하는 사업자에게 돈을 내는데 이것이 바로 인터넷접속료이다.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소송에서 나온 '인터넷에 전송료는 없고 접속료만 있다'는 주장의 원형이며 인터넷의 기본구동원리이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단말들을 많이 설치하여 수많은 개인과 기업들의 컴퓨터에게 인터넷에의 연결을 제공하는 사업자, 즉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가 나타났고 이들은 수많은 이용자들에게 인터넷으로의 관문이 되었다. 이 ISP들은 관문의 지위(gatekeeping)를 지렛대로 기존 인터넷의 구동원리에 반하게 행동하여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즉 계열사 콘텐츠는 지연없이 우대하여 전달하는 반면, 경쟁사 콘텐츠들을 지연 및 차단하거나 통행세나 전송료를 낸 콘텐츠를 우대하거나(paid prioritization) 또는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콘텐츠를 차별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었다. 2003년경 이런 위협으로부터 인터넷의 구동원리를 보존하기 위해 망중립성(net neutrality)이라는 규범이 만들어져³⁾, 모든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가 모든 콘텐츠를 차별없이 다룰 것을 요구하였다. 당연히 여기서 차별이 없다는 것은 과금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것이다.

3) Tim Wu (2003), Network Neutrality, Broadband Discrimination, Journal on Telecommunication and High Technology Law, Vol. 2.

하지만 같은 기간, 인터넷이용자들 중에도 좋은 콘텐츠를 온라인에 제공해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거대기업(Content Provider, CP)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ISP들은 망설치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또는 미래 망투자비용을 비축하기 위해 인터넷이용자들로부터 '망이용대가', 즉 전송료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⁴⁾ 즉 CP들로부터 ISP 자신의 고객들과의 통신에 대해서 전달료를 인터넷접속료와는 별도로 받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인터넷접속을 제공하지 않는 CP들로부터도 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유럽 통신규제기구(2012 유럽통신망사업자연합회 제안에 대한 코멘트)⁵⁾ 및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2010, 2015 Open Internet Order⁶⁾에 의해 각각 배척되었다. 이유는 공히, ISP들이 전송료를 받기 시작하면 인터넷의 구동원리에 정면으로 반하게 전화나 우편의 시대에나 부과되던 통신료 부담을 창설하는 것⁷⁾이며, 그 외에도 ISP들의 관문 역할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다양한 소통과 혁신이 위축되고 교란될 위험이 크다는 것⁸⁾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유럽과 달리 망중립성을 '가이드라인'이라는 강제력 없는 하위행정규범에 규정해왔다. 2011년 삼성스마트TV차단(KT), 2013년 카카오톡보이스차단(KT, SKT), 2015년 P2P트래픽차단(KT), 2018년 페이스북지연사태(KT), 2019년 넷플릭스지연사태(SK브로드밴드)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모두 망사업자들이 '망이용대가를 받아내겠다는 시도와 관련된 마찰이 계속 이어져왔다. 삼성TV⁹⁾와 P2P트래픽¹⁰⁾은 공짜로 자신들의 망을 이용해 자신들의 온디맨드비디오사업의 수

4) Washington Post (2005. 11. 4). SBC Head Ignites Access Debate, URL: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5/11/03/AR2005110302211.html>, 김희섭 (2011. 11. 17). 통신사 '인터넷망' 사용료 내라, IT업계 '못낸다'. <조선비즈>, URL: http://nsearch.chosun.com/article.html?id=2011110601024&site=chosunbiz&site_url=http%3A%2F%2Fbiz.chosun.com%2Fsite%2Fdata%2Fhtml_dir%2F2011%2F11%2F06%2F2011110601024.html&m_site_url=https%3A%2F%2Fm.biz.chosun.com%2Fsvc%2Farticle.html%3Fcontid%3D2011110601024

5) BEREC's comments on the ETNO proposal for ITU/WCIT or similar initiatives along these lines (2012. 11. 14). BoR (12) 120 rev.1

6) Preserving the Open Internet, Report and Order, FCC 10-201, 25 FCC Rcd. 17905, (2010) ("2010 Open Internet Order");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Open Internet, Report and Order, FCC 15-24 (2015) ("2015 Open Internet Order").

7) BEREC's comments on ETNO, 3쪽; 오픈넷 (2021. 5. 21). 세계 유일의 '망이용료' 폐지화 시도는 소비자 피해만 키울 뿐 - 인터넷에 '전송료' 부과한다는 환상, 망중립 투자 동기 꺾어. URL: <https://opennet.or.kr/19695>

8) 2010 Open Internet Order, 24-29, 67문단; 박경신 (2021. 6. 27). 미국 연방위원회 망중립성 명령에 등장하는 '망이용대가' 금지 규정. URL: <https://opennet.or.kr/19885>

9) 블로터 (2012. 2. 14). KT-삼성 스마트TV전쟁 - 사건의 재구성. "통신사들이 셋톱박스과 자사의 전화회선이 필수적인 IPTV의 사업모델이 점진적으로 스마트TV에 잠식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0) 이데일리 (2015. 11. 11). "망대로 이용자 트래픽 차단?..KT, 불법 P2P 차단한 것인데. "KT의 행위는 미국 컴캐스트의 BitTorrent차단에 비견되는데 2008년 FCC 결정문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BitTorrent file sharing had "become a competitive threat to cable operators such as Comcast because Internet users have the opportunity to view high-quality video with BitTorrent that they might otherwise watch (and pay for) on cable television." - FCC 08-183, 5문단.



익성을 위협하는 비디오파일 재생 및 공유를 한다는 이유로, 카카오톡보이스¹¹⁾ 역시 공짜로 자신들의 망을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음성전화의 매출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차단 및 지연한 것이었다.

한편 정부와 정치권은 이미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를 통해 망사업자들 사이에 한해서 ‘망이용대가’를 주고받도록 하였는데 발신측이 수신측에 데이터의 추후전송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망사업자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콘텐츠의 호스팅을 꺼려하면서 망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이 줄어들어 인터넷접속료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고,¹²⁾ 일부 망사업자는 발신자종량제 정산의 부담을 콘텐츠제공자에게 전가하여 이미 인터넷 전역에 ‘망이용대가’의 그림자가 드리웠었다. 2020년에는 ‘서비스안정화의무법’으로 콘텐츠제공자에게 전송품질에 대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망이용대가’를 받을 토대를 마련하기까지 하였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은 SK브로드밴드가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의 세계흐름에 배치되는 행태에 편승하여 넷플릭스에 ‘망이용대가’ 지급을 요구하면서 나타난 것이다.

11) 이정환 (2013. 10. 11). 내 스마트 폰 ‘mVoIP’ 막는 통신사, ‘창조경제’가 뒷배된다. “SK텔레콤 정 상무는 “mVoIP 차단은 경제적 트래픽 관리 차원”이라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 mVoIP가 전체 트래픽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통신사들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미디어오늘>, UR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435>

12) Abu Saeed Khan (2017. 12). Breaking the barriers of Broadband in Asia-Pacific, (citing Telegeography data from Q2, 2017) URL: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Breaking%20the%20barriers%20of%20Broadband%20in%20Asia-Pacific%2C%20LRNEasia.pdf>

SK브로드밴드는 미국시애틀에서 상위 망사업자를 통해 넷플릭스 데이터를 받아서 국내에 공급을 하다가 데이터량이 늘어나자 넷플릭스와의 합의 하에 각각 홍콩과 일본에서 무정산직접접속(peering)을 하였고 최근 들어 ‘망이용대가’를 지불하라는 주장을 해왔다. 넷플릭스는 이에 대해 망이용대가 지급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번에 넷플릭스에 대해 ‘망이용대가 지급의무가 있다’는 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어느 한쪽이 이겼다고 할 수 없는 애매한 판결이다. ‘망이용대가’의 정의 때문이다.

법원은 판결문 초반에는 ‘망이용대가’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원고 넷플릭스는 피고를 통하여 인터넷 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통신사가 자사망에 흐르는 합법적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인 망 중립성에 관한 논의나 ‘전송의 유상성에 관한 논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피고에게 적어도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이하 ‘연결에 관한 대가라 고만 한다)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이 보는 것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형평에 부합한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법원은 망이용대가가 전송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연결에 대한 대가’임을 적시하고 있다. 망중립성은 인터넷에 접속된 이후에 돈을 더 냈다고 해서 전송이나 우선전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리이지, 접속유지비용의 다양한 조달방법(peering, transit, paid peering 등)을 금지하지 않는다.¹³⁾ 그러므로 ‘연결에 대한 대가’, 즉 접속료를 주고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망중립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망중립성이 ‘연결에 관한 대가’와 무관하다는 표현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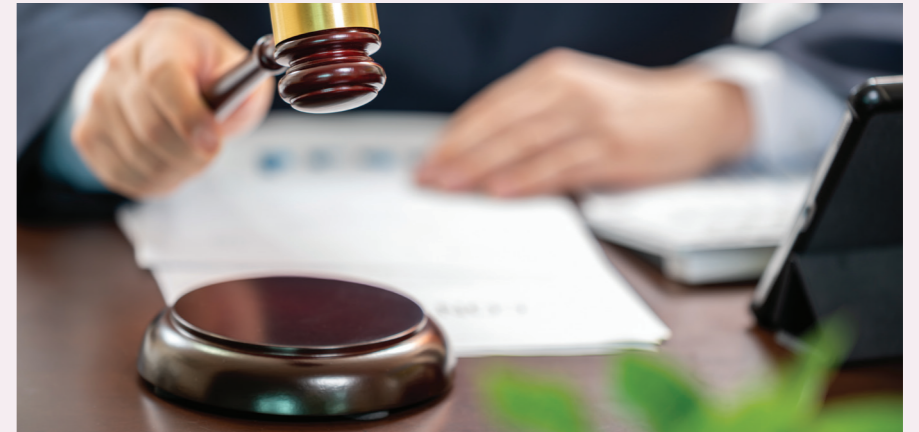
13) FCC, 2010 Open Internet Order, 각주 79.

‘SK브로드밴드 망에 대한 연결’이 넷플릭스에게 가치가 있는 유상의 역무임을 적시한 것 역시 잘못된 바는 없다. 단지 위 판시의 문제는, 거꾸로 ‘원고 넷플릭스의 데이터에 대한 연결’ 역시 피고 SK브로드밴드에게 가치있는 유상의 역무임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들이 SK브로드밴드로부터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유는 넷플릭스 등의 각종 콘텐츠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상호 가치있는 역무를 교환하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 무정산(settlement free peering)으로 이루어지고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LGU+, 넷플릭스-KT와의 직접접속이 지금까지 모두 무정산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다행히도 법원은 다음과 같이 ‘대가’의 내용을 폭넓게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CP가 ISP의 망을 통하여 트래픽을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지불하는 방식은, 회선용량 단위(Gbps)로 접속회선료 또는 접속통신료 등의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CP가 ISP에게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복수의 지역에 CP의 OCA를 설치하여 ISP의 망에 발생하는 트래픽을 경감시키거나 각종 공사비용과 설비의 업그레이드비용을 상호 분담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에 관한 대가가 지급될 수도 있다. 이처럼 원고들이 피고에게 금전적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 외에도 위와 같은 방법들 모두 “CP의 콘텐츠를 최종이용자에게 도달시키기 위해 ISP의 망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된다. 원고들과 피고는 협상에 의하여 어떠한 방식을 택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법원이 금전으로 그 지급을 명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가 완전히 결렬된 이후에 한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Global CP들 중 구글은 금전으로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국내 ISP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ISP들에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망 사용료의 지급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넷플릭스가 “국내 망사업자와의 접속은 CP-ISP 간의 필요가 일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금전적으로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판결문에 나온대로 넷플릭스 역시 OCA제공을 통해 대가를 대신할



수 있다면 결국은 상호 무상접속이 되기 때문이다. 판결에서 말하는 구글이 제공한다는 ‘다른 서비스’라는 것도 사실 대한민국 근처까지 자신의 데이터를 끌어와서 국내망사업자들이 먼 곳까지 선을 끌어오지 않고 연결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망이용대가’는 ‘연결에 대한 대가’, 즉 접속료이며 그 접속료는 반드시 망사업자가 받아야 한다기보다는 서로간의 비금전적 가치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도 인정한 것이므로 망중립성 원리에서 일탈한 판시를 한 것이 아니다.

단지 법원은 아래와 같이 인터넷의 구동원리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보인다.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 회원인 소비자로부터 연회비를 수취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결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동일한 서비스에 관하여 양 당사자로부터 이용대가를 수령하는 형태의 다면적인 법률관계는 현대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원고들이 A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콘텐츠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텐츠의 전송은 명백히 원고들의 적극적 행위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인터넷 망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계약상 의무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인터넷 망을 통한 콘텐츠의 전송을 두고 피고가 서비스 가입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무의 이행에 불과할 뿐 원고들의 인터넷 망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유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



신용카드회사 즉, VISA, Master 등에 대한 양면시장론은 이번 분쟁에 유용한 비유가 아니다. 신용카드는 자신 스스로 다수의 가맹점들을 모집하여 '다수점포에서의 결제의 편의'를 무기로 고객들의 가입을 유인하고 거꾸로 고객들을 다수 모집하여 다수고객들의 내접가능성을 무기로 가맹점들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물론 인터넷서비스 역시 네이버, 카카오 등을 호스팅하여 이에 대한 빠른 접근을 무기로 개인이용자들의 가입을 유인하고 이렇게 모은 다수가입자들을 무기로 역시 다수 콘텐츠를 호스팅하는데, 바로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네이버, 카카오로부터도 인터넷접속료를 받고 다른 한편 국내소비자들로부터도 인터넷접속료를 받고 있다. 여기까지는 VISA, Master와 같은 신용카드회사와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해외소재 콘텐츠제공자나 망사업자가 스스로 호스트하지 않는 콘텐츠제공자들을 대입해보자. 인터넷서비스는 신용카드회사와 달리 하나의 망사업자가 하나의 망을 양쪽에 모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망사업자들이 힘을 합쳐야 비로소 하나의 판매가능한 제품이 나온다. 국내만 하더라도 하나의 망사업자가 모든 국내외 CP들을 호스팅하거나 초고속인터넷가입자 전부를 호스팅하고 있지 못한다. 망사업자는 국내외 다른 망사업자들과 힘을 합쳐야만 국내고객들에게 매력있는 전세계적인 연결성(full connectivity)이 있는 인터넷 1회선을 제공할 수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VISA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VISA카드 가맹점에서 이용하려고 만들지, Master카드 가맹점에서까지 이용할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하지만 인터넷은 전세계의 컴퓨터와 소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매력포인트이

다. 이에 따라 전세계의 망사업자들은 각자 자신의 지역에서 개인고객들과 콘텐츠제공자들에게 인터넷이라는 상품을 파는 것은 물론 서로 상호접속을 해야만 한다. 미국망사업자, 한국망사업자, 그리고 전세계 다른 모든 망사업자들이 트래픽을 서로 교환해야만 비로소 인터넷이라는 제품이 완성되어 어디에서든 단 1명에게라도 팔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각 지역의 망사업자가 그렇게 팔아줘야만 다른 망사업자도 '인터넷'을 팔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구조에서는 모든 인터넷이용자는 - 주로 다운로드하는 개인이든, 주로 업로드하는 기업이든 - 모든 각자 자신이 소재한 지역의 망사업자에게 인터넷접속료를 냄으로써 인터넷이 완성된다.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은 미국CP의 트래픽이 한국에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망이용대가를 달라는 것인데 이렇게 국내망사업자가 해외CP에게 또는 자신이 호스팅하지 않는 CP에게 접속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VISA가 Master 가맹점에 카드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것처럼 무상성을 떨 수 밖에 없다. 네이버, 카카오가 미국 내에서 인기가 있다고 해서 AT&T나 버라이즌이 망이용대가를 청구하는 것이 양면시장 이론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물론, 넷플릭스와 몇몇 대형CP들은 미국망사업자에게도 접속료를 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그 비용으로 Open Connect Access 서버를 전세계에 뿌려두고 자체 Contents Delivery Network를 구현하고 있고 구글 역시 해저케이블을 스스로 설치하여 데이터를 세계각지에 분배하는 등 자기 지역의 망사업자가 할 일을 대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직접 접속을 하고 있지만,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접속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망이용대가를 주지 않으면 연결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원래의 루트(즉 한국망사업자에게 transit을 제공하는 상위 망사업자와의 transit 또는 peering)를 복원하면 된다.

다행히 법원은 신용카드에의 잘못된 비유에도 불구하고 망이용대가는 '연결에 대한 대가', 즉 접속료이며 위와 같은 자체CDN, 캐시서버, 데이터근접화(해저케이블) 등도 모두 연결에 대한 대가일 수 있다고 적시하며 연결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 될지는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협상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법원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법원 말대로 사적자치 원칙에 달려있으면서 당사자들의 협상 결과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원이 스스로 인정한대로 양당사자가 2018년 '합의'에 의해 일본 등에서 무정산직접접속을 시작했고, 이 '합의' 역시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양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SK브로드밴드가 갑자기 기존 합의로부터 이탈하여 새롭게 망이용대가를 요구한 행위에 대

해서는 법적 평가가 필요했다. 법원의 판시대로라면 2018년경 합의 역시 ‘연결에 대한 대가에 대해 유효한 합의였고, 그렇다면 별도의 채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려면 채무의 법적 근거에 대해 밝혔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원이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모습은 다음과 같은 판시에서도 드러난다.

원고들은 피고와 직접 연결되어 피고의 이용자에게 한정하여 콘텐츠를 전송할 뿐 피고로부터 전세계적인 연결성을 제공받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은 연결은 유사성이 인정되는 인터넷 접속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는 전세계 여러 ISP와의 상호접속을 통해 원고들에게 전세계적인 연결성을 제공할 수 있고, 원고들도 원하는 경우 얼마든지 원고들의 데이터를 전세계에 송수신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으로 피고를 통해 전세계 각 종단으로 트래픽을 송신하지 않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전세계적인 연결성이 보장된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전세계적인 연결성이 있어야만 유사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Paid peering과 같이 접속상대방 사이의 연결성만으로도 유사접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은 이미 무상접속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돈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돈을 낼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위에서 사적자치에 따라 망이용대가를 정하라고 한 판시에도 어긋난다.

한국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1-2위를 다툰 정도로 ‘인터넷 강국’이면서도 인터넷생태계의 혁신성은 허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0년 6월 스타트업 게놈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북경, 상해, 동경, 싱가포르에 뒤지는 20위이다.¹⁴⁾ 그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접속률이다. 서울의 IP트랜짓 가

14) 스타트업 게놈 (2020). The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격은 파리의 8.3배, 런던의 6.2배, 뉴욕의 4.8배, LA의 4.3배, 싱가포르의 2.1배, 동경의 1.7배를 넘고 있다.¹⁵⁾ 아프리카TV의 경우 1년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150억 원 가량을 인터넷접속료로 낸 적 있고¹⁶⁾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지점을 알려주는 유명한 코로나 앱 ‘코백’도 인터넷접속료 부담 때문에 확장을 못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¹⁷⁾

이렇게 된 이유는 진보·보수를 가로질러 전화, 우편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역대정부의 패착에 있다. 인터넷은 정보전달을 궁극적으로 클라우드소싱하여 – 즉 각자가 자기 집 앞의 눈만 쓸면 모두가 온 동네를 스노우체인 없이 돌아다닐 수 있다 – 모두가 소액의 ‘입장료’만 내면 무료통신의 세계를 무한정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통신체계인데 정보전달에 전화료나 우표처럼 과금을 해야 한다는 소위 ‘망이용료’라는 유령의 마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강제력이 있는 행정법규 또는 법률로 이 통신체계의 원리인 망중립성을 보호하고 있다. 여기에는 망사업자가 자신의 고객에게 트래픽을 전달하는 대가를 콘텐츠제공자에게 요구하면 안 된다는 내용, 즉 ‘망이용대가란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인터넷은 약자를 위한 플랫폼이다. 친약자성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망중립성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망중립성에 어긋난 판결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망중립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하지 못하였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돈을 낸다고 해서 전송 또는 우선전송을 해주는 행위를 명쾌히 금지하는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

15) Khan, Breaking the barriers of Broadband in Asia-Pacific, 전거서.
 16) 박세준 (2019.2.16). 비싼 ‘망’사용료 때문에 국내 동영상 기업 ‘난’. <동아일보>, URL: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90216/94153216/1>
 17) 박현익 (2020.3.3). 코로나 앱, 서버문제 해결하니깐 통신사 ‘망비용’에 골머리. <조선비즈>, URL: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3/2020030302970.html